

신청안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 접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여기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참여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절차

✓ 참여기업



✓ 참여자



✓ 수행기관이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업무위탁기관으로
참여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등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신청방법

☎ 031-447-9182

📠 031-447-9181

✉ nooko0322@korcham.net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3층)

* 자세한 사항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내용

✔ 일반형

인턴지원금 (1~3개월차)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분)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 (4~6개월차)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분) 최대 15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7~36개월차)	-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18개월 경과시점 800,000원 - 24개월 경과시점 800,000원 - 30개월 경과시점 600,000원 - 36개월 경과시점 600,000원 (4회)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 입사 일 기준 18·24·30·36개월 경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기업에 한해 지원
----------------------------	--

✔ 잠깐!!

- 1) 반드시 기업신청 및 협약체결 이후 채용
- 2) 반드시 채용 경과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원본대조필+직인> 및 신청서를 제출

예)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25.00.00~00.00.00 종료일 이후 자동연장(x)
(당해연도에 작성한 계약서 인정)

👤 참여자 요건

✔ 참여자 요건

- 만 60세(65년 생일이전 출생자) 이상 사무원, 관리자, 제조원, 운전원, 판매원, 조경원 등
 - 경비원, 미화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제외직종 참고)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참여기업 요건

✔ 참여기업 요건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기업 제외 (상세)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자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 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자 제외 (상세)

-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참여중 4대보험을이중취득한경우 (참여기간 중 30일 이하 일용직근로는 참여가능)
-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기업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참여시작 기준 5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 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국적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는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